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365

발의연월일: 2022. 7. 8.

발 의 자: 김주영·조정식·전용기

장철민 • 양경숙 • 정일영

송갑석 · 고용진 · 김수흥

윤후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,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, 어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, 동 제도는 2022년말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(농가인구/농가 고령화율 : '10년 3 백만명, 31.8% → '21년 2.2백만명, 46.8%),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외국 농산물 수입 급증,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 인상 및 쌀값 하락 등 농어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세제지원을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69조의3제1항, 제72조제1항, 제105조제1항).

주요내용

- 가.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(안 제69조의3제1항).
- 나. 농협·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 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(안 제72조제 1항).
- 다.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 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(안 제105조 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의3 제1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9조의3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제69조의3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-----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직접 어업에 종사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 지등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----- 2024년 12월 31일 --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「도시개발법」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 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

감면한다.

② ~ ③ (생 략)
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 인세법 |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[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(當期純利益)을 말한다]에 「법인세법」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)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만 해당한다)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 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「해당금액이 20억원(2 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

,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
세 과세특례) ①
<u>2024년 12월 31일</u>

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"당기순이익과세"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하지 아니한다.

1. ~ 8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
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세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
<u>a</u>) ①
2024년

<u>12월 31일</u>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- 1. ~ 6. (생 략)
- ② (생 략)

12월 31일 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